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2014년 4월

예천농업협동조합

목 차

I. 제안공모 요강	1
II. 제안서 작성 요령	2
III. 제안 일반사항	5
IV.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10
V. 각종 서식	14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제안 요청서

I. 제안공모 요강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토목+건축+기계설비)

나.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37-1번지의 12필지

다. 대지면적 : 25,199.00㎡

라. 건립규모 : 실시설계도면 참조

2. 제안서 접수

가. 접수마감 : 2014. 5. 7(수) 16:00까지

나. 접수장소 : 예천농협 (☎054-652-0970)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합니다)

II.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의 작성 및 제출은 일반현황과 기술제안서로 구분한다.

나. 일반현황은 본 용역에 참여할 업체의 기술 및 신인도등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 기술제안서는 「예천농협 산지유통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계획을 서로 제출받아 주관적 평가를 하는 자료를 말한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밀봉)는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표지 및 각 별지 서식에 대하여 글자의 크기와 모양의 변경 작성은 가능하나 그 형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입찰참가자 접수번호는 공란으로 비워둔다.

다. 편 집 : 세로작성, 좌철, 단면 인쇄

라. 제출수량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3. 일반현황 작성 방법

가. 기술인력보유현황

1). 평가자료 : 기술인력 보유현황

2). 중급기술자 3인이상 보유하여야 함

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한함

※ 기술인력 등급 자격기준<별표 1>에 의거 작성

※ 기술인력의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확인서 제출

나.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 B+이상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4)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자료제출을 원칙함

※ 기업신용평가 확인서등 증빙서류 첨부

다. 수행경험(실적)

단일계약건 15억원이상 단일공사 준공실적 보유업체

※ 용역실적증명서등 증빙서류 첨부

4. 기술제안서

가. 기술제안서는 평가항목 순으로 20면 내외로 작성하며 A4용지의 크기에 세로 작성 후 좌철하며 단면으로 편집한다.

나. 제안서 작성 시 글자 크기와 모양, 간격 및 여백 등은 자유로이 하며 컬러 사용은 가능함.

5.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가. 순 서 : 평가항목 순으로 작성

① 현장운용계획

- 현장운용조직체계 (협력사 포함)
- 자재수급계획, 장비운용계획등.
- 기타 제안사항

② GAP시설의 이해도

- 선행요건의 인지성
- 시공방법의 이해도

③ 안전관리, 품질관리방안 수립의 적정성

- 화재 및 추락방지 대책
- 바닥 스라브 평활도 유지 시공방안
- 기타 주요 공정별 품질확보 방안
- 기타 제안사항

④ 예산절감방안 (VE)

- 동등 기능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범위에서 예산절감방안제시
- 기타 제안사항

⑤ 공기단축방안

- Master Schedule 제시
- 공기단축방안 제시
- 기타 제안사항

⑥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 A/S조직도 및 계획서
- 기타 제안사항

⑦ 사후관리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지침서(메뉴얼) 제시
- 기타 제안사항

나. 작 성 : 한글 또는 20면 내외

다. 크 기 : A4 용지 기준(A3 또는 B4용지 일부 삽입 시 가로편집 삽입)

라. 내 용 : 글자체, 글자의 크기, 컬러사용 등 자유 편집

마. 편 집 : 세로작성, 좌철, 단면 인쇄

바. 표 지 : 서식 제 6호 서식을 유지하되 배열, 글씨크기, 색채, 표지의 재질 등 자유

사. 제출수량 : 11부(평가용9부, 보관용2부)

아. 제 출 일 :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제출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서류를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한다.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 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농협 요구사항을 따른다.

바. 농협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은 농협소유로 귀속한다.

7. 제안서 심사 및 선정 방식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가. 일 시 : 2014. 5월9일(금)

나. 장 소 : 예천농협 본점 회의실

다. 평 가

1) 관련분야 전문가 9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 명단은 비공개로 함.

2)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부문 중 일반현황과 입찰가격평가는 예천농협에서(계약담당자) 평가하고, 기술제안 평가는 붙임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한다.

라. 협상적격자 통보 : 2014. 5월중 별도통보 예정

III. 제안 일반사항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대상자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한다.(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②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③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는 생략한다.

2) 실 격

- ①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②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기호 등을 표시한 제안서

③ 그 밖의 심사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제안서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① 협상범위

-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수 있다.

② 협상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다만,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이 따라 10일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협상순서

- 1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⑤ 기 타

- 본 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와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2. 계 약

가. 계약체결 시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이 가능하다.

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농협계약사무처리 준칙 등에 의한다.

3. 평가관련 유의사항

- 가. 제안 설명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발주처의 고유 권한이므로 제안업체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나. 평가결과 및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4. 계약 특수조건

- 가. 자료관리
 - 1)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된 후 발주처에서 대여·제공한 제반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2) 제안자가 과업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나. 추진상황 보고
 - 1) 과업수행 업체는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사항은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 다. 손해배상 책임
 - 1) 본 과업수행 중 제안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라. 특기사항
 - 2) 본 설계 및 시공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사항의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이에 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공고내용이나 제안공모 요강 및 설계지침 등 본 공모와 관련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4) 본 제안요강 및 지침내용 중 불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사항은 질의회신 내용 관련법규 및 기준과 학술적 이론근거에 따른다.
 - 5) 저작권과 사용권
 - ① 당선작의 수정 및 변경의 권한은 발주처가 갖는다.
 - ② 당선작의 모든 저작권 및 사용권은 발주처가 갖는다.

제안서 평가 기준 및 절차

- 제1조(목적)** 이 평가기준 및 절차는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에 따른 시공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 업무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IV-1>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여 평가하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세분화하거나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고일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결격 사유)** ①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격사유로 본다.
 - ② 참가업체가 심사위원과 접촉한 사실이 증명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제안서의 서명누락, 주요사항의 전후 불일치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결격사유로 본다.
 - ④ 계약체결 이전에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상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후 결격사유가 드러났을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라 함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② “위원”은 외부 전문가 및 계약 담당자 등 8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제5조(협상대상자 및 협상 적격자 결정)** 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최고 득점인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정하고, 차순위자를 협상적격자로 정한다.
 -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 ③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 제6조(기타사항)** 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안서 작성·제출 시 이를 준수한다.
 - ② 심사위원이 평가한 서류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참가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적용 한다

IV.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80점)	일반 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보유상태 - 중급기술자3인 이상	적격 또는 부적격	객관적 평가 (계약담당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이상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두 조건 동시 충족) - 수행건수 : 4건이상 - 수행실적 : 20억원이상(건당 3억원이상)		
	공사 능력 (70)		◦현장운용계획(조직,자재,장비등)	10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GAP시설의 이해도	15	
			◦안전관리, 품질관리방안 수립의 적정성	15	
			◦예산절감방안 (VE)	15	
			◦공기단축방안	15	
	공사 후 관리 (10)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5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제안(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20	평점산식 에 의함
합 계				100	

※ 제안서의 평가 배점 등은 본 심사를 위해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평점결과 소숫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숫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술제안서(주관적 평가)의 배점표

배점	평가방법					비고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	5	4	3	2	1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중에서 선택하여 점수 부여 - 절대평가
10	10	8	6	4	2	
15	15	12	9	6	3	

2. 입찰가격 평정산식 세부기준

가. 입찰가격이 예산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당해 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산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이 예산금액의 100분의 80일 경우의 평점[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산금액의 80% 상당가격)] + [2 × (예산금액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예산금액의 80% 상당가격 - 예산금액의 6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산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

구분 \ 기준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특급기술자	- 기술사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박사학위를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를 가진 자 - 학사학위를 가진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1. 기능사는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 공고일 기준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 첨부)
 3. 국민연금 관리공단 가입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하여야 경합기준으로 봄.
 4. 학위는 관련학위, 대학 또는 학교는 관련학교임. (졸업증명서 첨부)

기술제안서 주관적 심사평가 채점표

1. 사 업 명 :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2. 접수번호 :

--	--

3. 평가내용 및 채점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기술능력 평가 (80점)	일반 현황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인력 보유상태 - 중급기술자3인 이상	적격 또는 부적격	객관적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이상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두 조건 동시 충족) - 수행건수 : 4건이상 - 수행실적 : 20억원이상(건당 3억원이상)		
	공사 능력 (70)		◦현장운용계획(조직, 자재, 장비등)	10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 평가)
			◦GAP시설의 이해도	15	
			◦안전관리, 품질관리방안 수립의 적정성	15	
			◦예산절감방안 (VE)	15	
			◦공기단축방안	15	
	공사 후 관리 (10)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5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위와 같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평가위원 : (인)

평가위원장 귀하

[서식 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응모) 신청서		등록일자
예천농협 공고 제2014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4.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안서 제출	2014. . .
	입찰건명			
입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이상 ☐ 보증금액 : 금 원정(W)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농협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정부 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불 입 :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예천농협 조합장 귀하				

-----■ ■----- 절 취 선 -----■ ■-----

입찰참가 (응모)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예천농협 공고 2014 -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2호]

서 약 서

대 표 자 상 호 :
소재지 :
성 명 :

당사는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제안 요청에 응모함에 있어 귀
조합의 제안요청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 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서약인 : (인)

예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대구경북농금농협에서 시행 하는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제안 요청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예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위 입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 H.P:
예천농협에서 시행 하는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시공 제안 요청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예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 1.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호]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제안서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2014년 월 일
제 출 자 (대표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시공에 대한 제안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 기술 제안서 10부(내용수록 CD 1매 포함) 2. 일반현황 심사제안서 1부(원본1부, 사본1부) 2014. . . 제출자 : (인) 예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 절 취 선 -----■■-----

제 안 서 접 수 증

접수번호	2014 -	접수일자	2014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직급 :	성명 (인)

[서식 6호]

『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신축공사 』 기 술 제 안 서

2014. 00.

○○○(회사명)

[서식 7호]

제안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14년 월 공고일 현재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서식 8호]

자기업체 평가표

■ 기술능력 객관적 지표 자체 평가

항목	평가기준	자기평가	심사평가 (적격/부적격)
최대실적	20억이상		
	4건이상(건당3억원이상)		
기술자 보유	중급기술자 3인이상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B+이상		

공 사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예천농협	
	증명서용도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실적증명					
	발주범위 및 실적제한기준(금액)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설계·시공 일괄() 시공()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금액)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4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주 소 : (Fax번호:)						
발급부서 :		담당자 :					

- 주 1) 국영기업체, 재단법인 등의 발주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영상·전시연출사업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내역서 포함)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공 사 실 적 집 계 표

준공년월일	건 명	발주기관	도금액(천원)
	총 계		

※ 작성요령

1. 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수주한 실적에 대하여는 '건명'란에 ()로 "일괄입찰"임을 표기
2. 하도급인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하도급증명(사업내용, 사업금액 등이 명시된 하도급 계약서 포함)이 있어야 인정함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도금액을 해당 지분만 기재
4. 행사 참여회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을 모두 기재

기술인력 보유현황

[illegible]

기술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illegible]

- ※ 1. 전문직을 대상으로 작성
2. 담당업무는 시공, 설계분야 중 선택 기재
3.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행 정 처 분 내 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
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가 격 제 안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2014 - 호	입찰서제출 마 감 일 자	2014년 월 일
	건 명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제안공모		
	금 액	금 원정(W)		
입찰자	상호 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농협계약 사무처리 준칙 및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조합에 의하여 수락 되면 공사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입찰서에 따라 위의 공사수행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속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 합니다. 불 임 : 가격산출 내역서 1부. 2014. . . 입 찰 자 : 인(사용인감) 예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가 격 산 출 내 역 서

사 업 명	예천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공사		
사 업 기 간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W)		
	항 목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2014년 월 일 입 찰 자 : 인(사용인감) 예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작성내용에 따라 줄 수를 증감하셔도 됩니다.(양식은 자유)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심사위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관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관이나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관 심사위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예천농협**에서 시행하는 청렴서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예천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서 약 자 : 대표 (인)

예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귀하

[서 식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지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